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2026학년도 하반기 초빙교원 채용 공고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에서 근무할 초빙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지역대학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인원	직무내용
초빙교원 (조교수직급)	자동화 시스템	1명	○ 자동화장비 설비보전 및 자동화설계 (PLC, 공유압, CAD) ○ 학위과정, 하이테크과정, P-Tech과정 등 운영

2. 응시 자격 및 계약조건

○ 자격 기준

구분	응시자격 기준
초빙 교원	○ 자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학칙에서 정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직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계약 조건

구분	내 용				
초빙 교원	☐ (계약기간) 1년 이내, 성과 실적에 따라 3회까지 계약 체결 가능 ○ 계약기간 : 2026. 8. 18. ~ 2027. 2. 28. ○ 기준시수 : 주당 12시간 수업을 원칙으로 함 <초빙교원 기준시수 적용범위> <table border="1"> <tr> <td>적용</td><td><학위과정> 2년제 학위과정(주간, 야간), 학위전공 심화과정(주간, 야간) <직업교육과정> 하이테크, 전문기술(일반계고위탁), 중장년특화(장기)</td></tr> <tr> <td>비적용</td><td>비정규과정(여성재취업과정, 중장년단기(1,2), 이주배경, AX과정 등)</td></tr> </table> ○ 총 3회의 계약이 만료된 자 중 성과 실적 및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경우 추가 3회(3년)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 ☐ (보수) 연봉, 강의수당, 연구활동비로 구분하여 지급 ○ 연봉은 신기술교과개발비 및 성과급으로 구분 ○ 퇴직금은 사유 발생 시에 별도 지급 ○ 성과급은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계약 종료시점에 법인에서 지급(월할 계산) ☐ (복무) 전임교원에 준하여 학장이 관리	적용	<학위과정> 2년제 학위과정(주간, 야간), 학위전공 심화과정(주간, 야간) <직업교육과정> 하이테크, 전문기술(일반계고위탁), 중장년특화(장기)	비적용	비정규과정(여성재취업과정, 중장년단기(1,2), 이주배경, AX과정 등)
적용	<학위과정> 2년제 학위과정(주간, 야간), 학위전공 심화과정(주간, 야간) <직업교육과정> 하이테크, 전문기술(일반계고위탁), 중장년특화(장기)				
비적용	비정규과정(여성재취업과정, 중장년단기(1,2), 이주배경, AX과정 등)				

※ 보수는 「수입지출예산집행지침」 제21조(운영수당)의 <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지급기준>에 따름

3. 채용 공고

○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공고

※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응시자격,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

4. 우대사항

○ (원칙) 가산점은 서류심사에만 적용

가점항목		가산점수	비고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별도 인정
여성과학기술인		서류전형 만점의 3%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		서류전형 만점의 5%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 하나만 인정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1위(금메달, 훈장)	서류전형 만점의 3%	
	2위(은메달, 훈장)	서류전형 만점의 2%	
	3위(동메달, 훈장)	서류전형 만점의 1%	
	우수상(산업포장)	서류전형 만점의 0.5%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1급	서류전형 만점의 3%	
	2급	서류전형 만점의 2%	
	3급	서류전형 만점의 1%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서류전형 만점의 1%	

※ 장애인을 제외한 가점 항목은 채용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인정

※ 장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우 다른 가점 항목과 중복 인정

5. 원서접수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026.07.15.(수) ~ 2026.07.24.(금) 10: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 (※우편, 방문 접수불가) ○ 이메일 주소 sungmun_cho@kopo.ac.kr

6. 채용 인원 및 일정

○ 채용예정학과 및 인원

근무 캠퍼스	학과	채용교원	인원
영남융합기술	모빌리티메카과	초빙교원(신규)	1명

○ 채용일정

구분	일자	시간	비고
① 채용공고(초빙)	7.15.(수)~7. 24.(금)	-	대학 홈페이지, 알리오
② 원서접수(초빙)	7.15.(수)~7. 24.(금)	접수마감: ~7. 24.(금) 10:00	이메일 접수
③ 서류심사(초빙)	7. 28.(화)	심사시간: 14:00	캠퍼스
④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7. 28.(화)	발표시간: 17:00	전화/이메일 통보
⑤ 역량심사(초빙)	7. 30.(목)	심사시간: 14:00	캠퍼스
⑥ 역량심사 합격자 발표	7. 30.(목)	발표시간: 17:00	전화/이메일 통보
⑦ 면접심사(초빙)	8. 04.(화)	심사시간: 14:00	캠퍼스
⑧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8. 04.(화)	발표시간: 17:00	캠퍼스
⑨ 학교교원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자 추천	~8.06.(목)	-	캠퍼스→대학
⑩ 최종합격자 발표	8.11.(화)	발표시간: 17:00	전화/이메일 통보
⑪ 합격자 등록	8.11.(화)~8.13.(목)	등록마감: 8.13.(목) 17:00	캠퍼스
⑫ 임용계약서 작성	~8.14.(금)	-	대학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초빙교원 신규 채용 제출 서류

구분	대상 서류	원서접수 시	합격자 등록 시	비고
1	초빙교원 지원서(별지4 서식)	이메일 제출	-	필수
2	자기기술서(별지5 서식)	이메일 제출	-	필수
3	졸업증명서(별지6 서식)	이메일 제출	-	필수
4	경력(재직)증명서(별지6 서식)	이메일 제출	-	필수
5	자격증 및 면허증(별지6 서식)	이메일 제출	-	해당자
6	가산점 증명서류(별지6 서식)	이메일 제출	-	해당자
7	이력서 1통	-	원본제출	필수
8	최종학력증명서 1통	-	원본제출	필수
9	경력증명서 1통	-	원본제출	필수
10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통	-	원본제출	해당자
11	기본증명서(상세) 2통	-	원본제출	필수
12	주민등록등본 2통	-	원본제출	필수
13	주민등록초본 1통	-	원본제출	필수
14	신원진술서(약식) 2통	-	원본제출	필수
15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1통	-	원본제출	필수
16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국가 유공자(보훈대상자) 확인서	-	원본제출	해당자

[유의사항]

- ① 원서접수 시 증빙자료에 '출생년도', '출신학교명' 등 개인정보와 성별, 신체조건, 용모 등과 관련된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위터마크의 경우 최대한 블라인드 처리)
- ② 필수 기재 내용 누락 시 서류심사 등 전형 절차에서 제외
- ③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됨
- ④ 산업체 및 연구기관 경력(재직) 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부서명,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⑤ 산업체 및 연구기관 경력(재직) 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되는 근무경력만 인정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무경력은 미인정됨

- ※ 여러건의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이 동시에 나오도록 출력 후 제출
- ※ 폐업회사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홈텍스발급)'와 4대보험 中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을 제출하여야 함.
- ※ 1인 기업으로 폐업(업체 대표)되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이 되지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8. 지원자 유의사항

- 우리 대학은 공정·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초빙 및 산학겸임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 배제, 합격 취소 및 불합격 처리, 향후 응시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사항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서류의 허위 작성, 기재 내용 착오·누락, 증빙서류 미비 또는 위·변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결정에 따름.
-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연령(출생년도), 학교명 등의 기재는 불가하며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제출서류에 해당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시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 부정행위 등 부정 채용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합격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응시가 제한됨
-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 단계별로 무효 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됨.
 - ※ 부정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 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 지원자 우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 시 합격이 취소됨.
-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합격이 취소됨
-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우리 학교법인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을 취소함.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 날인한 번역문 첨부하여야 함.
- 지원자는 합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채용담당 부서의 요구 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됨.
- 합격후보자는 합격자 등록 시 대상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 기타 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결정에 따름

9. 지원서(증빙)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별지4] 초빙교원(신규임용) 지원서

〈초빙교원 지원서〉(신규임용)

지원 캠퍼스				지원 학과			
인 적 사 항							
성 명							
생 일							
이메일							
현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학 력 사 항(졸업 및 학위 취득만 기재)							
구분	입학연월일	졸업연월일	학과(전공)			학위명	
전문학사	년 월 일	년 월 일					
학사	년 월 일	년 월 일					
석사	년 월 일	년 월 일					
박사	년 월 일	년 월 일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무연수	근무기관명 및 부서명			직위(담당업무 등)	
0000.00.00.~0000.00.00.		00년00월					
0000.00.00.~0000.00.00.		00년00월					
0000.00.00.~0000.00.00.		00년00월					
0000.00.00.~0000.00.00.		00년00월					
0000.00.00.~0000.00.00.		00년00월					
자 격 및 면 허							
취득일자	종 류		시행기관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관련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지원자 : (인)

[별지5] 초빙교원(신규임용) 자기기술서

〈초빙교원 자기기술서〉[신규임용]

지원 캠퍼스	지원 학과	성명
○○캠퍼스	○○○과	○○○
1. 자기소개(500자 내외)		
2. 지원동기(500자 내외)		
3. 주요 경력 및 업적(1,000자 내외)		
4. 직무수행계획(1,000자 내외)		

[별지6] 초빙교원 졸업·경력·재직증명서/자격(면허)증/가산점증명서류

〈초빙교원 지원자 증명서류〉

지원 캠퍼스	지원 학과	성명
○○캠퍼스	○○○과	○○○
1. 졸업증명서(전문학사) (해당자)		
※ 증명서 하나당 1페이지 사이즈 그림(해상도 유의)으로 붙여넣고, 필요한 만큼 칸을 늘려 사용		
2. 졸업증명서(학사) (해당자)		
3. 졸업증명서(석사) (해당자)		
4. 졸업증명서(박사) (해당자)		
5. 경력(재직)증명서1 (필수)		
6. 경력(재직)증명서2 (필수)		
7. 자격증 및 면허증1 (해당자)		
8. 자격증 및 면허증2 (해당자)		
9. 가산점 증명서류 (해당자)		

[별지9] 대학교원 자격기준

대학교원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제16조에 따라 제정된「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면서 현장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대 학 졸 업 자 · 동 등 자 격 자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동 등 자 격 자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계
2	2	4	3	4	7

※ 비 고 :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자격기준충족요건 : 산업체 경력은 반드시 3년 이상이고,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연수 합계 4년(대학졸업자) 또는 7년(전문대 졸업자)
- 연구실적연수는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
 - *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 * 산업체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 교육경력연수 :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의 교육경력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42조제1호 별표4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원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조교수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술지도사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현장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비 고

1. 경력연수(經歴年數)는 명장(名匠)·기능전승자 선정일, 자격취득일 및 국제기능 올림픽 입상일 이후의 근무연수를 말한다.
2. 산업체 현장 근무경력에는 자영업 영위기간을 포함한다.

[별지10-1] 지원자격에 대한 경력 인정 기준

지원자격에 대한 경력 인정 기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관련)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1. 교육경력	
가.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나. 학력인정을 받는 전문대학이상의 각종학교에 근무한 경력	100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 시간강사의 교육경력(단, 한 학기 합산 주당 9시간 이상인 경우는 70%, 6~8시간은 50%, 5시간 이하는 30% 인정)	30~70
2. 연구실적	
가. 최종학위 취득자	
① 박사학위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경력	석·박사과정 재학년수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석사학위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연구경력	석사과정 재학년수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실시한 연구경력	100
다. 연구소육성법, 벤처기업육성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100
3. 산업체 등 근무경력	
○ 국가기관, 공공단체, 국영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100

※ 세부 연구실적연수환산율 산출기준 : 별지25-2 참조

[별지10-2] 연구실적연수환산율 산출기준

연구실적연수환산율 산출기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시행 2025.1.16.]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률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00%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 규정 제4조 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한 학기 합산 주당 9시간 이상인 경우는 70%, 6~8시간은 50%, 5시간 이하는 30% 인정)	30 ~ 70%
3.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 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 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11. 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	70%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률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 규정 제4조 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2.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3.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 5.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 6.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 7.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 13.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 14.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	100%

[별지10-3]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1. 16.] [교육부고시 제2025-4호, 2025. 1. 16., 일부개정]

제2조(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
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 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
 - ↳ 개별법에 따라 연구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에 한함
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
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1. 한국개발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5. 한국법제연구원
4. 통일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 한국환경연구원
8. 산업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2. 국토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24. 건축공간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2024. 1. 26.>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제8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3. 삭제 <2011.12.31>
3. 삭제<2024. 1. 26>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 삭제<2024. 1. 26>
6. 한국한의학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개정 2021 7 20>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제3조)

기 관 명	
1. 한국과학기술원	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광주과학기술원	10. 한국과학창의재단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울산과학기술원	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3. 한국세라믹기술원
6. 한국원자력의학원	1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 한국연구재단	16. 기초과학연구원